【 2 】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출년월일 : 01. 12. 20

제 출 자 : 김광배 의원외 인

□ 제정이유

0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0 조성목표액 : 30억원

0 조성기간 : 5년

0 지원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등

0 위원회 설치 : 기금융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위원회 설치

0 융자금 지원 및 상환 : 개인 3천만원, 단체1억원 이내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대부이율 : 년3%)

□ 덧붙임 : 발의의원 서명부

조례안 1부.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군농업발전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농어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취농자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농어촌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농어가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농가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기금의 조성은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지역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산물 수출관련사업
4.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5.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6. 농· 축산업 경영자금
7. 농· 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구성및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이하 " 융자신청자" 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도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지원 및 상환) ①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농업인 단체의 경우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년 3%로 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 상환한다.

④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농· 어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이자는 감면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회수) ①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융자금 전액을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농· 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 어업인이 다른 시· 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감독) ①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기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양주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5조(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련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중 주민소득지원 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융자금의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03년 3월부터 지원하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입 조치된 자금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 관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